



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749호 2020. 5. 6.(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제2563호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	3
제2564호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2565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2566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2567호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2568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제2569호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46
제2570호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50
제2571호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제2572호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60
제2573호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제2574호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2575호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3
제2576호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87
제2577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제2578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2579호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96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조례 제2563호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대면회의에 한정한다)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수집 또는 안전검토 등 심사를 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서면보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거창군의회 의원인 위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심사를 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21
----------	---------

제출일	2020. 4. 7.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거창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안전검토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조례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변경함

1)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2) 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과 실제 경비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취지에 맞게 변경

나. 위원회 위원의 수당지급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3조)

1) 변경 : 일비 ⇒ 참석수당

2) 신설 : 심사수당

3) 지급제외 : 거창군 소속 공무원, 거창군의회 의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2. 5.~2. 2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
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조례 제2564호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군수는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관내 기업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자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를 “군수에게 이자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응급장비 지원) ① 군수는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에서 응급장비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4조(이자 지원) ① (생 략)</u> <u>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자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11조(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군수</u> <u>는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관내 기업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 범위</u> <u>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제14조(이자 지원) ① (현행과 같음)</u> <u>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군수에게 이자 보조금 신청</u> <u>을 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9조(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군</u> <u>수는 관내 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u> <u>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 (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u> <u>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u> <u>같다.</u> <u>1. 기본부스는 조립 부스 2개 기준</u> <u>2. 부스임차비 100분의 80 지원, 지원</u> <u>금액은 2백만원 이내</u> <u>3.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u> <u>지원한도액은 3백만원 이내</u> <u>③ 제1항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u> <u>같다.</u></p>	<p><u>제18조(응급장비 지원) ① 군수는 근로</u> <u>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등</u> <u>을 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에서 응급</u> <u>장비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u> <u>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u> <u>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19조(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군</u> <u>수는 관내 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u> <u>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 (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u> <u>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u> <u>규칙으로 정한다.</u></p>

1.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신청 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2.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3.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안 제11조)
- 나. 근로자를 위한 응급장비 지원(안 제1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가. 예산 : 15,000천원
 - 1) 전기설비 안전점검비 : 5,000천원
 - 2) 응급장비 구입비
: 응급장비 200개×기업 10곳×50퍼센트 = 10,000천원

4. 작성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11
----------	---------

제 출 일	2020. 4. 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관내 기업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비용, 응급장비 설치구입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사랑 환경을 조성하고 군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근거 마련(안 제11조)
- 나. 근로자를 위한 응급장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18조)
- 다. 서식을 규칙으로 이동 규정함(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15,000천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1. 14.~2. 3.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조례 제2565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공공 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승인변경 신청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중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를 군수에게 해야 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 방법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월별로 부과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금액은 별표 2의 산출기준에 따른다.”를 “지원금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u></p> <p>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2. 공장건물 배치도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5. 오수 및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p> <p>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p>	<p><u>제3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u></p> <p>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승인·승인변경 신청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p>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오수·폐수 유입 처리를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 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조(폐수 등 배출 신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고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폐수 등 배출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은 서면으로 알린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군수는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월의 사용료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서

제6조(폐수 등 배출 신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를 군수에게 해야 한다.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월별로 부과한다.

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사용료 부담지원) ① 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초기입주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용료 일부를 제2항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100분의 60이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별표 2의 산출기준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 부담지원)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초기입주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용료 일부를 제2항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100분의 60이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비용발생

나. 관련조문 :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농도 분석비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180,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를 위한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을 위해 자격을 갖춘 환경업체에 검사의뢰 후 수수료 매달 지급 = 연 36,000천원

작성자 :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12
----------	---------

제 출 일	2020. 4. 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거창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공공 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결정기준 등이 명시되어있음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필요에 따라 신속한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절차나 서식 등을 규칙으로 위임

- 1) 폐수 등 유입처리 승인·승인변경 신청 및 절차(안 제3조제2항)
- 2) 배수설비 개시 신고(안 제6조)
- 3) 사용료 부과절차(안 제10조)

나. 사용료 산정기준, 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 규칙으로 위임(안 제10조·제11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6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36,0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1. 21.~2.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조례 제2566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제1항”을 “제1항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5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6항”으로 한다.

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일 것. 다만, 공동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나.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2
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3
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
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
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
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
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p> <p>1.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p> <p>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p> <p>1.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p> <p>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일 것. 다만, 공동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p>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일 것

② (생략)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나.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신 설>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별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제9조의2 관련)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비고

1.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text{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월 수} \div 3$$

2.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text{보증금} \times \text{이자율} \div 12\text{개월}$$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22
----------	---------

제 출 일	2020. 4. 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시각장애인 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확대(안 제2조)

- 1) 현행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 2) 확대 : 현행 +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영주 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인 장애인과 그 가족

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안 제6조)

- 1) 인용조문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2)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감면기간 추가 연장

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9조의2·별표)

- 1) 대상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2) 임대기간
 - (가) 3개월 이상
 - (나) 3개월 초과 시 5퍼센트 인하율 가산
3개월 미만 시 월할 계산
- 3) 감면율 : 10퍼센트~50퍼센트(5퍼센트 단위 구간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제78조의3, 「지방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3. 18.~4. 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조례 제2567호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의3(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 신청등 세액이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 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등과 관련된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이의신청등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이의신청등 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p>제4조의3(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p> <p>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등과 관련된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p>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이의신청등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이의신청등 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23
----------	---------

제 출 일	2020. 4. 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안 제4조의2)

- 1)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함

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4조의3)

- 1) 세액 1천만원 이하인 이의신청등 접수 시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2) 대리인 선정 신청(군수) → 선정대리인 지정 요청(도지사) → 지정 통보(군수) → 신청결과 통지

다. 선정대리인 의무·우대 규정 신설(안 제4조의4)

- 1) 선정대리인 활동 우수자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우대
- 2)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 2. 14.~3. 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조례 제2568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7조 조 제목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공유재산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공유재산의 대장”을 “공유재산 대장”으로 한다.

제15조의2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조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영 제13조 제3항제8호, 제1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12호,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토석 채취료) 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석 채취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채취료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에 재산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별표 1에 따라 계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다만, 부지면적의 경우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조 제목 “(대부료의 감면)”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면할 수 있다.”를 “면제”로 같은 항 제2호제3호 중 “감면할 수 있다.”를 “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항을 을 제4항·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료 및 사용료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분의 20
2. 대부료 및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분의 25

3. 대부료 및 사용료가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u><단서 신설></u></p> <p>②~⑩ (생략)</p> <p>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u>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u>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같음할 수 있다.</p> <p>제15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u><신설></u></p> <p>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u>다만 위촉직 위원</u>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p> <p>②~⑩ (현행과 같음)</p> <p>제7조(공유재산 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u>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u> 이 경우 공유재산 대장은 전산자료로 같음할 수 있다.</p> <p>제15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12호,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25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토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토석시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③ 삭제(2016.12.28.)

④ 삭제(2016.12.2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에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토석 채취료) 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채취료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에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별표 1에 따라 계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다만, 부지면적의 경우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삭 제>

1.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는 부지평가액 전액

2.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
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

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
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

분의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물평가
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경우에 건
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산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의 산
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건물의 (빌딩의 경우 해당층
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
하는 면적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전용면적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 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

<삭 제>

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2. 제1호에 따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공용면적의 30퍼센트를 적용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지상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고,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사.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바.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바. (생략)

② 삭제 (2016.12.28.)

③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면제

가.~사.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경

가.~바.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경

가.~바.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료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분의 20
2.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분의 25
3. 대부료가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⑤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⑦~⑨ (생략)

제40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세 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 연면적의 세 배 이상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1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

1.~7. (생략)

② 별표 1에서 규정되지 않은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

③ (현행과 같음)

⑥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료 및 사용료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분의 20
2. 대부료 및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분의 25
3. 대부료 및 사용료가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④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⑦~⑨ (현행과 같음)

<삭제>

제41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

1.~7. (생략)

② 별표 2에서 규정되지 않은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

준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5조(물품의 구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별표 2, 정리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준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5조(물품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별표 3, 정리구분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건물과 부지의 면적 계산법

1. 건물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frac{\text{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	---	-------------------	---	--

2. 부지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frac{\text{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합계)}}{\text{해당 건물의 연면적}}$
--------------------	---	-------------------	---	--

1.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이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함
2.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24
----------	---------

제 출 일	2020. 4. 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군의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려는 경우 수익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범위 이탈,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적법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위임 사항 반영(안 제15조의2제1항)

1) 조례로 위임된 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가) 영 제13조제3항제8호 : 행정재산 수익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나) 제17조제6항 :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대상

다) 제29조제1항제12호 : 일반재산 수익계약으로 대부

라) 제52조의3제1항제2호 : 특정인에게 지식재산 사용·허가등

나. 상위법령 위반사항 삭제 정비(안 제25조)

1) 삭제 :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 따로 징수가능

2) 정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토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채취료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가능

다. 위임범위 일탈 규정 정비(안 제26조제3항)

건물 대부료 산출 시 층별로 부지평가액에 감경비율 적용규정 삭제
라. 건물과 부지의 면적 계산법(안 별표 1)

1) 계산법을 보기 쉽게, 별표로 규정

2)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 계산법 ⇒ 건물과 부지의 면적 계산법으로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함

마.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규정 조문 순서 및 문장 정비(안 제3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4조·제29조·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7조·제29조·제31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2. 19.~3. 10.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조례 제2569호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거창군민에게 긴급히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경기회복 및 주민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긴급히 지급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군민의 피해를 줄이고 그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기본소득 지원) ① 군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재난기본소득을 예산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제4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긴급 재난기본소득 가구당 지원

나. 관련 조문

1) 제4조(재난기본소득 지원)

2)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한시적 경비로 1억 이상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지원액 \ 연도	2020년
군비	4,165,900

3. 관련 의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원 함으로써 가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도)

1. 1인~2인 가구 : 9,060가구 × 300천원 = 2,718,000천원
2. 3인~4인 가구 : 2,656가구 × 400천원 = 1,062,400천원
3. 5인 이상 가구 : 771가구 × 500천원 = 385,500천원
4. 총 4,165,900천원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김 근 호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의안 번호	2020-25
----------	---------

제 출 일	2020. 4. 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장기화로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기본소득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정함(안 제4조)

1) 예산 범위에서 지원,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함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지원 가능

다. 환수 및 중복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 4,165,9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생략(「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조례 제2570호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24
----------	---------

발의일자	2020. 2. 24.
발 의 자	신재화 의원

1. 제안 이유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리계획을 심의·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기능, 직무, 운영,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6조)

다.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2,0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안전총괄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3. 20.~3. 2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조례 제2571호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기존 제목 외의 부분)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향노화 제품, 약초 및 약초 가공품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 사업
- ② 군수는 향노화산업 홍보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향노화 제품이나 약초 가공품을 예산 범위에서 마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향노화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향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군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한 건강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건강관리 강사 인력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4. 그 밖에 건강관리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운영·관리를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항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3. 항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4.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약초 가공품의 생산,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6. 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7. 그 밖에 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6조(항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3. 항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4.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약초 가공품의 생산,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6. 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 7. 항노화 제품, 약초 및 약초 가공품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u>② 군수는 항노화산업 홍보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노화 제품이나 약초 가공품을 예산 범위에서 마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u></p> <p>제11조의2(항노화지원센터 설치 등)</p> <p><u>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한 건강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p><u>제12조(거창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위치)</u> <u>① 군수는 약초, 향노화 제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거창약초유통센터(이하 “약초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u> <u>② 약초센터는 거창읍 거합대로 3372 일원에 둔다.</u></p>	<p><u>민관 협력체계 구축</u> <u>3. 건강관리 강사 인력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u> <u>4. 그 밖에 건강관리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운영·관리를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u></p> <p><삭 제></p>
<p><u>제13조(약초센터의 기능) 약초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약초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전처리 및 저장</u> <u>2. 약초와 향노화 제품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u> <u>3. 향노화 제품 개발</u></p>	<p><삭 제></p>
<p><u>제14조(약초센터의 위탁) 군수는 약초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약초센터의 관리·운영을 약초생산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u></p>	<p><삭 제></p>
<p><u>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 제></p>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 안 제6조제2항, 제11조의2

나. 비용 발생 요인 : 약초가공품 등 주민에게 지원, 향노화지원센터 운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50	100	100	100	100
약초가공품 지원	30	60	60	60	60
지원센터 강사료	15	30	30	30	30
지원센터 운영비	5	10	10	10	10

3. 관련 의견

약초 가공품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공동체형성

작성자 : 산림과장 최 태 환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27
----------	---------

제출일	2020. 4. 7.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약초가공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항노화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노화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 대상 확대함(안 제6조제1항제7호)

1) 항노화 제품, 약초 및 약초 가공품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 사업
나. 약초 가공품 지원근거 신설(안 제6조제2항)

다. 항노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정함(안 제11조의2)

- 1) 기능 : 군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한 건강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 건강관리 강사 인력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등
- 2) 위탁운영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5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3. 6.~3. 2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
랜드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조례 제2572호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 명칭은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이하 “힐링랜드”라 한다)라 한다.

② 힐링랜드의 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 1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및 운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힐링랜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림치유센터,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운영사무실,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힐링랜드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입장료 등 징수 및 할인) ① 힐링랜드의 입장료 및 체험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권 발행, 가족단위 방문자에 대한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등의 징수, 할인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입장료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7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
- 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제6조(입장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 1. 거창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다만, 탐방 또는 시설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만 사용일 그날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1항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료 및 체험료(제4조제1항 관련)

1. 입장료

구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1,000원	700원	300원
단체	700원	500원	200원

2. 체험료

구분	기준	요금
산림치유센터	30분	어른: 5,000원 청소년·어린이: 3,000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에 실제 필요한 비용	

[별표 2]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시설명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성수기	비수기
주차장	승용차, 승차인원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30분	500원 (10분 초과당 200원)	
		1일	5,000원	
	승차인원 16인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	30분	1,000원 (10분 초과당 400원)	
		1일	10,000원	
산림휴양관	36제곱미터 (2인~4인)	1일	100,000원	70,000원
	52제곱미터 (6인~8인)		140,000원	90,000원
	80제곱미터(10인)		180,000원	150,000원
숲속의 집	38제곱미터(2인~4인)	1일	100,000원	70,000원
	52제곱미터(6인~8인)		140,000원	90,000원
셔틀버스	힐링랜드 시설사용자: 무료			

비고: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비용

나. 제2조제3항 : 군수는 힐링랜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림치유 센터,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운영사무실,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569	549	559	570	581	2,828

-최근 물가상승률 1.9퍼센트 반영

3. 관련 의견

산림치유로 인한 국민의 정서함양 및 효율적인 향노화 힐링랜드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 필요함

4. 비용추계 요약

가. 인 건 비 : 60백만원

나. 일반관리비(제세공과금 등) : 479백만원

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 30백만원(2020년만)

작성자 : 산림과장 최 태 환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의안 번호	2020-28
----------	---------

제 출 일	2020. 4. 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된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임을 명시함(안 제1조)

나. 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1) 명칭 :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 2) 위치 : 가조면 수월리 산 19번지 일원

다. 시설 및 운영을 정함(안 제3조)

라. 입장료·체험료·시설사용료, 할인 등을 정함(안 제4조, 별표 1, 별표 2)

마. 입장료 등 면제 및 반환을 정함(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0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569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3. 6.~3. 2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
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조례 제2573호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지원대상지역”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를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군의원”을 “거창군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지원대상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특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3.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4. 그 밖에 하천환경,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 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적용범위)</u>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u>제3조(주민회의 개최)</u>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u>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u>군의원과</u> 이장으로 한다. ③ 당해 읍·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u>제3조(주민회의 개최)</u> 「낙동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u>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u>사업을</u>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해당</u>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u>거창군 의원</u>과 이장으로 한다. ③ <u>해당</u> 읍·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p>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생략)

②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① (생략)

② 당해 읍·면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 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지원대상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3.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 시설 운영
4. 그 밖에 하천환경,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29
----------	---------

제 출 일	2020. 4. 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는 2017년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에 국농소 마을회 소속 농업회사법인 “강과사람”이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준공됨에 따라 그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가 함께 규정되었음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입법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 삭제(안 제2조)
- 다.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3조·제4조·제6조·제7조)
- 라.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신설(안 제8조)
 - 1)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
 - 2)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기능
 - 가) 하천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나)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 다)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등
 - 3)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근거 마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3. 18.~4. 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조례 제2574호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조 제목 “(위원장 등의 직무 등)”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와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2.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도로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 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제23조 조 제목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을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용”을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 공사비의 1퍼센트로 함.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 가. 공사시공자의 도장이 찍힌 도급계약서
 - 나. 건축주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2.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함

제2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제6호를 제4호·제5호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를 제1호·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한 번만 한다.

제43조제2항 중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를 “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조시설: 레미콘·아스콘·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 2. 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등 저장 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제4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p>1. 삭제 (2017.1.25.)</p> <p>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p> <p>가.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p> <p>나.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p> <p>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p> <p>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p>	<p>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와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p> <p>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p> <p>2.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p> <p>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p> <p>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p>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4.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건축사업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건축관련업무 부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15조(도로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식물 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2.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삭 제>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5조(도로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 공사비의 1 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은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제26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 공사비의 1 퍼센트로 함.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공사시공자의 도장이 찍힌 도급 계약서

나. 건축주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한 공사 원가계산서

2.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함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와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5.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1조(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급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은 매년 1월에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한다.

제34조(대지의 조경)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삭제>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1조(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급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34조(대지의 조경)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이외의 용도와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의저층부분 및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의 면적까지로 한다.

4. 그 밖에 조경의 배치, 수종 및 식재기준 등에 대하여는 법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생략)

제3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영 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단서에 따라 제1항의 경우 총 부과 횟수는 5회 이내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삭 제>

1.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한 번만 한다.

한다.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증탑·물탱크·변전설비·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아스콘·석유화학 제품 제조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등 저장 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증탑·물탱크·변전설비·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를 말한다.

<삭 제>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14
----------	---------

제출일	2020. 4. 7.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건축법」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령위배 소지가 있는 내용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정비(안 제6조제1항)

나. 법령위임 범위 벗어나 법령위배 소지 규정 삭제

1)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 중 별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안 제6조제2항제4호)

2) 이행강제금 감경 위반행위 중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안 제42조제2항제1호)

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적용완화 규정 정비(안 제15조제1호·제2호)

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산정기준·예치방법 변경(안 제23조)

마. 가설건축물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 축소(안 제26조제4호)

바.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법령 확인·재기재 사항 삭제(안 제34조제3항)

1) 위임행정규칙인 국토교통부고시 조정기준에 따르면 되는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기준

사. 법 개정예 따라 이행강제금 규정 변경(안 제42조제1항·제3항)

1)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됨에 따라 그 내용 정비

2) 법령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변경

가) 총 부과횟수 5회 ⇒ 1년에 한 번

아. 공작물 범위의 모호한 기준 정비(안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1) 삭제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건축법」 제4조 · 제5조 · 제13조 · 제20조 · 제27조 · 제42조 · 제58조 · 제61조 · 제80조
-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 제15조 · 제80조의2 · 제11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1. 21.~2.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조례 제2575호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교육 및 홍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방역용품 등 지원)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민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수대응 단체 등에 지원)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 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응을 한 우수 기관·단체·개인 등에 예산 범위에서 감염병병원체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발적 방역 노력
2. 군의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방역용품 등 구입비 비용발생

나. 관련조문 : 제4조(방역용품 등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101	20	20	20	20	181

3. 관련 의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 기준)

1. 마스크 구입비 : 11백만원
2. 손소독제 구입비 : 47백만원
3. 살균제 구입비 : 43백만원

작성자 : 보건소장 조춘화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0-26
----------	---------

제 출 일	2020. 4. 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방역용품을 지원하여 방역취약계층을 보호함은 물론 군민 스스로 감염병 예방의 주체로 만들고, 방역 우수대응 기관·단체 등을 지원하여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방역을 유도하여 감염병 유행 및 확산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입법목적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한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정함(안 제3조)
- 다. 방역용품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 라. 감염병 우수 대응 기관·단체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마. 지역의료기관과 상시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101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생략(「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조례 제2576호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2)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포함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발급 대상자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본지원 대상 가정의 산모(이하 “기본지원 대상”이라

한다)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이면서 기본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산모의 친족, 법적대리인을 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20년 3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발생요인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나. 관련 조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0,500	70,500	70,500	70,500	70,500
	교통비 지원	8,000	8,000	8,000	8,000	8,000
	소계	78,500	78,500	78,500	78,500	78,5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 140명 × 503,000원 = 70,500천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가. 40명 × 200,000원 = 8,000천원

작성자 : 보건소장 조춘화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의안 번호	2020-13
----------	---------

제 출 일	2020. 4. 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지원과 수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심적 부담 경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용어의 뜻을 정함(제2조)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함(제3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본지원 대상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제1항)
- 2) 기본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제2항)
-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제3항)

다. 이종지원 제한 및 지원 중단을 정함(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78,5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1. 30.~2.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조례 제2577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타목란,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면 대상	감면율
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50퍼센트

6. 타목에 따른 감면기간은 3개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요금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30
----------	---------

제 출 일	2020. 4. 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같은 재난발생 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감면 신설(안 별표 7)

- 1) 감면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 2) 감면율 : 50퍼센트
- 3) 감면기간 : 3개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3. 16.~4. 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조례 제2578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아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감면 대상	감면율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50퍼센트

비고

1.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2.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함.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목의 경우 지방상수도로 전환 후 2년 이내에 급수신청의 경우에 한정하며, 4년차부터는 정상요금을 적용함
4. 아목에 따른 감면기간은 3개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요금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0-31
----------	---------

제 출 일	2020. 4. 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같은 재난발생 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요금 감면 신설(안 별표 7)

- 1) 감면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 2) 감면율 : 50퍼센트
- 3) 감면기간 : 3개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5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3. 16.~4. 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조례 제2579호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유족”이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1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으로서, 지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 명의 희생자에 대하여 한 명의 유족에게만 지급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결정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한다.

②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원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대장관리) 군수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희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연락처			희생자와의 관 계		
	주 소					
지급계 좌	금 용 기관명			계좌 번호	예금주	
<p>「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거창군수 귀하</p>						
신청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 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사항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지급대상자 주소: ◦지급대상자 거창군 전입일: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거창사건희생자의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정보 활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희생자와 관계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생활보조비 지원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희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희생자와의 관 계	
	주 소				연 락 처	
결정일			지급대상 여 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정사유						

귀하를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거 창 군 수 (인)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신고서

희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희생자와의 관계	
	주소	(☎)				
신청인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주소	(☎)				
신고사유						

본인은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연번	희 생 자			신 청 자			신청일	지 급 결정일	지급계좌 (예금주명)	환수 일자 및 사유
	성명	생년 월일	주 소	성 명	주 소	희생자와 관 계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최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25
----------	---------

발의일자	2020. 2. 24.
발 의 자	최정환 의원

1. 제안이유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도도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생활보조비 지원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지급신청 및 결정, 지급시기 및 방법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변동신고, 지급대장관리,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2020년 추경예산 확보예정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거창사건사업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3. 20.~3. 2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규칙 제1280호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3조제2항에 따라 군수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다른 규칙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군 자체감사는 법령, 조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군 출자·출연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단체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부서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제8조제2항 중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을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12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1조(목적)</u> 이 규칙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군수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u> 군 자체감사는 법령, 조례,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p>	<p><u>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u>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p>
<p><신 설></p>	<p><u>제2조의2(적용범위)</u>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u> 2. <u>군 출자·출연기관(단체를 포함한다) 및 보조단체</u> 3. <u>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자</u> 4.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p><u>제3조(감사의 구분)</u> ① <u>자체감사</u>(이하 “감사”라 한다)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p> <p>② 종합감사는 <u>2년</u>에 한 차례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인력이나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u>제3조(감사의 구분)</u> ① <u>감사</u>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p> <p>② 종합감사는 <u>3년</u>에 한 차례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인력이나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공무원 및 기관·단체 임직원의 출석답변·진술 요구
2. 증명서, 사유서, 그 밖의 관계 문서·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②~③ (생략)

제8조(범죄·훼손 등의 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2조(감사결과 공개) 군수는 감사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에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진정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부서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범죄·훼손 등의 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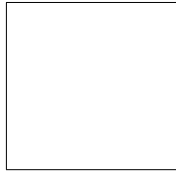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2조(감사결과 공개) 군수는 감사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NO.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h1>감 사</h1>		위 사람은 거창군 감사단임을 증명함 20 . . . 거 창 군 수
9.3센티미터				6.8 센티 미터

(뒷 면)

<h2>주 의</h2>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이 증명은 거창군 <u>감사단 편성공무원만</u> 휴대한다.2. 이 증명은 진출 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3. 이 증명을 <u>주운 사람</u>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답 서

주 소:
소 속:
직위와 직명:
성 명:

(생년월일)

(전 소속, 직위와 직명)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서
(직) (성명)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 한 기간은?

답:

문: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후면)

문: 더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 하게 하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직	성명		(인)
감사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거창군 자체감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번호	2020-9
------	--------

제출연월일	2020. 4. 3.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이유

감사사각지대 방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자체감사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입법목적이 법령 위임사항을 정한 위임규칙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적용범위 신설(안 제2조의2)
- 다.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 라. 자료제출 요구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과 일치되도록 정비(안 제6조제1항)
- 마. 직제개편사항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
- 바. 개인정보수집 최소화(안 별지 제3호서식)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3조제2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규제개혁담당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2. 26.~3. 17.
 - 나) 예고결과 : 의견있음(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거창군의회	<p>○ 의회사무과 감사범위를 재무감사로 한정하고,</p> <p>○ 의회사무과의 재무감사 주기를 감사주기를 개정안 제3조의 종합감사 주기인 3년으로 명시하는 의견을 제출함</p>	<p>○ 감사범위를 한정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92조제2항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체규정으로 재무감사로 감사범위를 제한하게 됨으로써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음</p> <p>○ 또한 「지방자치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을 제외한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과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포괄적인 지휘·감독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음</p> <p>○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종합감사 실시는 어려우며,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함이 타당함</p>	제출의견 미반영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규칙 제1281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조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규칙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시험·승진”을 “시험”으로 “법령”을 “규칙”으로 “규칙으로”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인사위원회”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개최일시”를 “회의의 일시·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신규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신규임용시험”으로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4조”를 “영 제64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은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말한다)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의3제1항·제3항·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본문(기존 제2항)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영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제1호 중 “규정된”을 “다른”으로 “사람이어야 한다.”를 “사람일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규정된”을 “다른”으로 “직렬이어야 한다.”를 “직렬일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같다.”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용예정직급

가. 대학졸업자: 6급·7급·연구사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조 제목 “(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특수 직무분야·직무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기존 제1항)중 “직무분야·환경”을 “직무분야·직무환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특수환경”을 “특수직무환경”으로 한다.

제17조제5항·제6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제2항 중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을 “재직한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 파견 국제협력의사, 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5급 이상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7급 이상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 소요최저연수 산입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규제 개혁”을 “규제혁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를 “국정과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기존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제25조의2 조 제목 “(자격증 가점)”을 “(자격증 가산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제23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2항 중 “거창사건관리사업소”를 “거창사건사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1조 중 “「지방공무원법」”을 “법”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6, 별표 7, 별표7의 4, 별표 8,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3,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2, 별표7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적용범위)</u> 거창군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u>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u>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0.1.27>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 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3.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4. (삭제 2006. 8. 25) 5. 전보제한자의 전보심의 6.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p><u>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u>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u>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u> 공무원의 임용·시험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u>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u>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u> ① <u>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u> 및 <u>공개경쟁승진시험</u>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 <u>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u> 및 <u>공개경쟁승진시험</u>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u>구비서류</u>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p>	<p><u>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u> ① <u>신규임용시험</u> 및 <u>공개경쟁승진시험</u>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 <u>신규임용시험</u> 및 <u>공개경쟁승진시험</u>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u>첨부서류</u>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p>
<p><u>제6조의2(응시수수료)</u>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u>령</u>”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1.~3. (생략)</p> <p>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p>	<p><u>제6조의2(응시수수료)</u> ① <u>영 제64조 제1항제2호</u>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u>영 제64조 제2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부를 환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②~③ (생략)</p> <p>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p> <p>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 시험위원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p> <p>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말한다)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② (생략)</p> <p>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u>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u></p> <p>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p> <p>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은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p> <p>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p>	<p>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p> <p>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p> <p><u><단서 삭제></u></p> <p>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p> <p><u><삭 제></u></p> <p>② 영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p>

현 행	개 정 안
<p>(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p> <p>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p> <p>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④ (생략)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u>규정된 학과</u></p>	<p>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p> <p><u><삭 제></u></p> <p><u><삭 제></u></p> <p>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u>따른 학과를</u></p>

현 행	개 정 안
<p>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u>사람이어야 한다.</u></p> <p>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u>규정된</u>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u>직렬이어야 한다.</u></p> <p>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학 및 전문대학졸업자 : 9급, 지도사 나. 고등학교졸업자 : 9급</p> <p>⑥~⑧ (생략)</p> <p>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u>같다.</u></p> <p>⑩ (생략)</p> <p>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 ① (생략) ② (생략) ③ <u>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u></p> <p>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p>	<p>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u>사람일 것</u></p> <p>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u>따른</u>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u>직렬일 것</u></p> <p>3. 임용예정직급 가. 대학졸업자: 6급·7급·연구사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p> <p>⑥~⑧ (현행과 같음)</p> <p>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u>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u></p> <p>⑩ (현행과 같음)</p> <p>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중)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직무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직무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직무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p>

현 행	개 정 안
<p>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p> <p>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④ (생략) ⑤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군수는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p> <p>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② (생략)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p>	<p>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u><삭 제></u></p> <p>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u><삭 제></u></p> <p>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② (생략) <u>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u></p>	<p>제23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u></p>
<p>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생략) <u>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 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단서 신설></u></p>	<p>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현행과 같음) <u>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u>최근 3년간 5급 이상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u></p>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규제 개혁</u>,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u>녹색성장 등 국정과제</u>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4.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p>	<p><u>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u></p> <p>2. <u>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7급 이상 임용예정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u></p> <p>② <u>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 소요최저연수 산입한다) <p>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u>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규제혁신</u>,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u>국정과제</u>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4. (현행과 같음) 5. 「<u>숙련기술장려법</u>」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u>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u> <p>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p>

현 행	개 정 안
<p>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p> <p>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p> <p>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p> <p>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 읍에 근무하는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읍면 및 거창사건관리사업소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렬이 없거나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하려는 경우에는 읍면 및 거창사건관리사업소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p> <p>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p>	<p>5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p> <p>제25조의2(자격증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p> <p>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p> <p>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 읍에 근무하는 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읍면 및 거창사건사업소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렬이 없거나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하려는 경우에는 읍면 및 거창사건사업소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p> <p>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p>

[별표 1] 각종 시험시의 첨부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분	첨부서류의 종류	제출대상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 기재)	모두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정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정
4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에 한정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 대상자에 한정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정
7	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비고

위 표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로부터 제출받는 것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각 1부를 제출받아 첨부해야 한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학예연구	학예일반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계	기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자	
		금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직렬	계급		연구관 · 연구사
	직렬	직류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잡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	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조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고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비 고

1.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해당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부터 2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2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부터 4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4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 1급부터 4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4급까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부터 6급까지 기관사 1급부터 6급까지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산업기사(항공)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기사(항공)산업기사(항공)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기사(지적)	기술사(지적)기사(지적)	기술사(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환경기능사
조리	조리		조리사 1급, 조리기능장	조리사 1급,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의2] - 삭제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비고 : 위 “체격” 항목 중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입상자(2년)

비 고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업기계	기 능 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웨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웨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농 업	전 자	<p>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 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전자기기 기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p>
	원 자 력	<p>기술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에너지관리</p>
	금 속	<p>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p>
	야 금	<p>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p>
	섬 유	<p>기술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일반화학	<p>기술사: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학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학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자 원	<p>기술사: 자원관리, 화학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광산보안, 화학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광산보안, 화학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학취급</p>
농 화 학	일반농업	<p>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p>
	잡 업	<p>기사: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p>
	농 화 학	<p>기술사: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축산, 식품 기 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 능 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종자, 식품 기 능 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산림 기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산림 기 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산림 기 능 장: 산림 기 사: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해양, 수질관리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수산제조, 식품 기 사: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식품가공
	수산물검사	기 술 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수산양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조선 기 사: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일반기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전기, 전자기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술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술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술 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술 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항공 산업기사: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기 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운수운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 설	기 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 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정 기 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정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정 기 능 사: 실내건축, 조정,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 능 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 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 능 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 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능장: 조리 산업기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기능사: 전기, 기계정비, 조정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단, 기능직 공무원 중 신설된 기후환경 직렬의 자격증은 기사(대기환경), 산업기사(대기환경), 기능사(환경)로 한다.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재경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세무사 (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 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자(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 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자(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 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자(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 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축안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사(2) 한의사(2)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1급)(특수) 간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	일반의무				
약 무	약 무	치과(2)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조리			영양사(5)	영양사(2) 오물처리사 1급(3)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간호조무	조리			조리사 1급(4)	조리사 1급(2)	조리사 1급	
운전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4] <신 설>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직렬	직류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카재,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술사(섬유, 의류)
		화	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고분자제품,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화	학		
		산	업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열관리, 에너지관리 ,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직류			
농업연구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업	조경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토양환경)
	수의연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물리, 수산 양식, 어로)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명공학)
보건연구	의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직렬	직류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비 고: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직렬	직류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업	기술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예	기술사(종자,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관설키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차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평생교육사 1급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섬유,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 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관련)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	운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소방:기계분야,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공 업	기계운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분야,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야금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학	기술사(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학,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업	직류			
공업	가스	기술사(화공안전)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잡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화학	기술사(농화학)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환경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의	수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해양수산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건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방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생	위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무		치과의사		
약무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제				
간호	간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수 질			
환 경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수도토목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시설	시설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교통시설	도시교통 시설계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간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2] <삭 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의3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자격증	등급	비율	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정보관리기술사, — 컴퓨터 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 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 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 기사	0.5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	정보관리기술사, — 컴퓨터 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 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 직응용기사,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 기사, — 전자계산기산업가 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다군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으로 본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및 기능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자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공 업	<p>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p> <p>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p> <p>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p>기계운전</p> <p>기 술 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p> <p>기 능 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p> <p>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p> <p>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더운전, 로울러운전, 툴러운전, 모우터크레이터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p>	<p>산업기사자격 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자</p>

공 업	조 선	기 술 사: 조선 기 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기 능 장: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 사: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열관리	기사자격증 기 ^산 비율 적용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 능 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 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 열간압연 ,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 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 업	일반화학	기술사: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 가스 기사: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술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잡 업	기사: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학	기술사: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 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 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가축인공수 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 반), 방사선취 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산림 기 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 산림 기 능 사:	
	산림이용	기 술 사: 산림 기 사: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해양, 수질관리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제조	기 술 사: 수산제조, 식품 기 사: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수 산 물 검 사	산업기사: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수산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해양생산관 리, 어로,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전기, 전자기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 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 능 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술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기 능 사: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방사선종위술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보건의료기사1급, 보건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임상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능 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 사: 방사선관리, 의공 기 사: 의공 산업기사: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종위술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환 경	수 질	기술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조정,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환경 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대 기	기술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산림 기 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조정,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환경 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폐 기 물	기술 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산림 기 사: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조정,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기 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정, 지적, 교통 기 능 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정,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일반토목	기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지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설계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방송통신	디자인	기술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통신사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전송기술	기능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기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전기, 기계정비, 조경	
	시설관리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펙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농촌지도	기계 농업기계	<p>기술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p> <p>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점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차공구설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차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p>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점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차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p> <p>선반, 연삭, 밀링, 수차제어선반, 수차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점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다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전기	<p>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p> <p>기능장: 전기공사, 전기기커, 전기</p> <p>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품질경영, 승강기</p> <p>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p> <p>기능사: 전기공사, 전기기커,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p>	
공업연구	전자	<p>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p> <p>기능장: 전자기기</p> <p>기사: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p> <p>기능사: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p> <p>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p>	

공업연구	금속	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재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 섬유,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 염색 기사: 섬유,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섬유,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 생사기사 2급(1999.3.27아전 취득)	
	화학	기술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화학 ,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위험물관리, 위험물 , 가스 기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학,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위험물 ,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경영	기술사: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학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품질경영 , 포장	
	물리	기술사: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 전자, 원자력, 열관리, 에너지관리 , 광학 산업기사: 정밀측정, 계량물리 , 전자, 열관리,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작물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시설원예, 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 관리사
농촌지도	농업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시설원예, 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업연구	원 예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시설원예, 벼짓중군,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토양환경 ,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 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 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근중	기능사: 생사 기사: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농림토양 평가관리 ,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시설원예, 벼짓중군,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 자
	농촌생활	기술사: 섬유, 염색가공 ,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농어업토목 ,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기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산업기사: 섬유, 섬유가공, 섬유물리, 섬유화학 ,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평생교 육사 1급, 사회조 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 생교육사 2급, 사 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평생교육 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 소년지도사1급, 평 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술 사: 기계, 카케제작 ,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카케 공정설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 비철야금비파괴검사 ,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 , 건설기계정비 , 웨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 에너지관리 , 자동화정비 ,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웨도장비정비, 계량기계 , 정밀측정 , 계량전기 , 계량물리 ,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 에너지관리 ,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농촌지도	축 산 축 산	기술 사: 축산, 식품 기 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카 능 사: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농촌지도	임 업 조 경 임 업	기술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카 능 장: 산림 기 능 장: 산림 기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카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수의연구 농촌지도	수 의 가축위생	기술 사: 축산 기 사: 축산 산업기사: 축산 카 능 사: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어촌지도	해양환경 수산자원 어 촌	기술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 어업생산관리 , 수산양식, 어병 , 어로 ,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카 능 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술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 어로, 어병, 어업생산관리 , 수질환경 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능사: 어로	
	수산가공	기술사: 수산제조, 식품 기사: 수산제조, 수산양식, 어병 ,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수산제조, 식품 기능사: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학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의공 기능사: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외무 기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 방사 선사, 간호사, 조 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 위생사, 작업치료 사, 위생사, 영양 사, 응급구조사 2 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화공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 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 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능장: 산림 기사: 공업화학, 화공 ,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 식 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 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 식물보 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 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 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촌지도	농업토목	<p>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시설연구	건축	<p>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마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바계, 건축목공, 커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비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4조제4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연구사 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이하
직무분야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경 감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위 사	상 중 사 사	하 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사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하		
판 사 · 검 사		9호봉 이상	6호봉 이상	4호봉 이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상	7급	8급	9급 이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지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 련 직 무 분 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 비 고: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 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같은 경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경우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제24조제2항 관련)

구분		상당 계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임기제 공무원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육공 무원	대학교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		42호봉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행정, 세무, 교육 행정, 사회 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응 용,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 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컴퓨터 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 정설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설비, 유체기계, 전기응용, 산업계 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컴 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항공기 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소방, 품질관리, 품질경 영, 선박설계, 조선, 소음진동, 선박 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생산자동화, 패키 트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 량, 자동차정비, 자동차점사, 건설 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가 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 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 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산업계측제어, 전 자,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응 용,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 비, 항공, 열관리, 에너지관리, 산 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소방 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소방 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품질경 영,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 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 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 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 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 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컴 퓨터응용기공, 전산응용기공, 가 계조립, 기계가공조립, 패키트로 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 냉동기계, 보일러, 에너지관리, 철 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 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점사, 건설기계, 건설기계 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케랑기계, 케랑전기, 케 랑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 형, 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판 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배관,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 측제어, 산업계측제어, 전자, 전자 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 어,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 기계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 전자,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 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소방설비<소음진동, 가 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품 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가 계)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공 (전 업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전기신호 , 전기안전, 소방설비, 소방, 품질관리, 품질경영, 공업계측제어, 산업계측제어 ,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전기신호 , 산업안전, 품질관리,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산업계측제어 , 전자,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응용,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원자력발전, 열관리,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커가, 전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전기신호, 전기커가,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산업계측제어 ,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에너지관리)
공 (금 업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금속제련 ,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품질경영)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품질경영)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품질경영)
공 (섬 업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섬유 , 의류, 품질관리, 품질경영)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섬유 , 의류, 품질관리, 품질경영,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가공, 방직, 섬유가공, 섬유 ,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 (화 가 업 공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화학 , 세라믹, 고분자제품 ,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품질경영)	기사(공업화학 ,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품질경영) 기능장(위험물관리, 위험물,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공 ,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품질경영)
공 (자 업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자원관리 ,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농 업 업)	기술사(종자, 원예, 시설원예 ,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원예, 시설원예 ,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원예, 시설원예 , 식물보호, 식품)
농 (축 업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산림 ,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농화학, 조경)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수의사		
해양 (수 업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어업생산관리 ,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어업생산관리 ,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 항로 표지, 수질환경, 식품)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해양 수산 (선 박)	기술사(조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카체, 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컴퓨터 응용가공 ,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1급)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 위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품질경영,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품질경영, 포장)
의료 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화공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교분자제품 ,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공 ,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산림 ,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공 ,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계급 직렬	5 급	6급 · 7급	8급 · 9급
시 설 (토목, 수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 건축목공, 목재창호 ,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철도토목 ,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철도토목 ,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응용 ,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통신 ,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응용)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응용 ,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응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전파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응용, 전파통신,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파전자통신 ,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 전자,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응용 ,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통신 , 통신선로)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품질경영,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품질경영,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품질경영,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품질경영,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품질경영, 포장) 오물처리사 2급, 환경기사

토목운영		<p>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p>	<p>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건축운영		<p>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p>	<p>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통신운영		<p>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p>	<p>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p>
전기운영		<p>기술사(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품질경영)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커기, 전기)</p>	<p>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커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전기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품질경영, 승강기)</p>
기계운영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산업기계설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품질경영)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점사, 기계공정설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품질경영)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p>	<p>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점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배관, 정보통신, 열관리,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품질경영, 영사)</p>

화공운영	<p>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화공,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품질경영, 식품)</p> <p>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장(위험물관리, 위험물, 가스)</p>	<p>산업기사(화공, 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품질경영, 식품)</p>
가스운영	<p>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 화공안전)</p> <p>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p> <p>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위험물)</p>	<p>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 화공)</p>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p>기술사(조선, 선박설계, 선박구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산업기계설비)</p> <p>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p> <p>1·2·3·4급 항해사</p> <p>1·2·3·4급 기관사</p>	<p>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p> <p>5·6급 항해사</p> <p>5·6급 기관사</p>
농림운영	<p>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p> <p>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림,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p> <p>기능장(산림)</p>	<p>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p>
보건운영	<p>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p> <p>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p>	<p>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p> <p>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p>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 업 연 구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산업기계설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바철야금,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화공, 세라믹, 코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전기신호, 공업계측제어,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 건조, 선박기계,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섬유,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품질경영, 포장, 식품)</p> <p>기사(일반기계, 패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전기신호, 공업계측제어, 산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컴퓨터시스템응용,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섬유,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원자력발전, 열관리,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품질경영,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p>
농 업 연 구	<p>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p> <p>기사(종자, 시설원예, 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패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염색가공,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p> <p>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p>
농업연구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농업연구 (축 산)	<p>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p> <p>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p> <p>수의사</p>
농업연구 (농 공)	<p>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기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산업기계설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품질경영)</p> <p>기사(일반기계, 패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품질경영)</p>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p>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p> <p>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p> <p>영양사, 위생사</p>
녹지연구	<p>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p> <p>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p>
해양 수산연구	<p>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어업생산관리, 수질관리, 식품)</p> <p>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어업생산관리,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p>

계급 직렬	연 구 사
보건 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과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 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화공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공 ,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 산림공학 ,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 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철도토목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 연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 촌 지 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원예 , 산림, 축산, 임산가공 ,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기계 , 용접, 금형, 산업기계, 산업기계설비, 유체기계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섬유 ,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원예 , 산림경영, 산림공학, 산림 ,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점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 ,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 촌 지 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어업생산관리, 식품 ,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어업생산관리, 식품 , 수질환경)

비고: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같은 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군	인	인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휴 대 폰: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물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정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망 지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 붙임:** 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끝.

(발 신 기 관 명)

직 인

1. 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명	임용연월일	임용직급	임용직위	비고

2. 임용불응자 명단

등록번호	성명	임용불응사유

비고: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시 험 요 구 서

접수번호	기 관		개 인				
①	소속		② 시험 구분		③ 임용예정 직 급	직명	
	요구					직류	
④	한글		⑤ 연령	만 세	⑥ 현 직 급	계급	급
	한자					직명	
⑦ 선 택 과 목	가.	⑧ 필기시험 면제사유			⑨ 제 1 차 시험 면제사유	년 월 일 시행 제 회 1 차 합격 응시번호	
	나.						
⑩ 자 격 · 면 허 훈 련 등			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	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 대장 원본 확인	대장번호	
						확 인 자 성 명	
위와같이 요구함.						계 인	(사진) (3.5cm×4.5cm)
년 월 일 (인) 시 험 요 구 기 관 의 장							
※ 시 험 시행사항	시 행 차 수	1		2		3	
	시행연월일	
	회 수	제 회		제 회		제 회	
	응 시 번 호						
	결 과						
응시 번호			응 시 표			계 인	(사진)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 한 규격
년 시행 제 회 시험		년 월 일					
임용예정직명 :		(급 류)			(인)		
성 명 :							
시험요구기관명 :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 ①~⑩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첨부란)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험개시 1시간 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한다.
2.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용구(만년필 또는 볼펜)를 지참하여야 한다.
3.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생 년 월 일	성 명	(한글)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보통", "미흡" 외의 경우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0-26
----------	---------

제출연월일	2020. 4. 27.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험위원 공정성 강화를 위한 현지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의 기준을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및 수당 정비(안 제3조제2항, 제3조의2)

- 1)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인 인사위원회 서면심의사항 삭제
- 2) 인사위원회 수당의 법령 위임형식은 “조례”로 규정됨에 따라 삭제,
「거창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

나. 신규임용시험 관련 서식 및 조문 정비

1) 신규임용시험 응시원서 서식 정비

- 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블라인드채용 운영 표준안 서식 반영(안 별지 제3호서식)
- 나)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경우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 사용

2) 신규임용시험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저소득층 면제 확대 및 법령 재기재로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안 제6조의2)

- 가) 법령에 규정된 응시수수료 반환사유에 해당하면 반환하도록 개선
- 나) 응시수수료 면제범위를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 신규임용시험 등 전 시험으로 확대

3) 지방방호직렬 신체검사 규정 삭제(안 제15조제3항, 별표 4의2)

- 가)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1)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면접시험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구성, 필기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위촉

2)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근무경험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 위촉, 응시자 기피절차 안내,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 포함
라. 법령 불부합 및 법령 위배 소지 있는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관련 조문 삭제(안 제13조의2제3항, 제18조제3항)

1) (현행) 서류합격자 결정시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 이상의 범위 ⇒ (법령 개정) 각각 3배수

2)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 등록 규정 삭제

가) 경력경쟁임용시험은 법령상 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임용유예 규정 없음

마. 신규임용시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점 폐지(안 제13조의3)

1)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폐지(시행 2021. 1. 1.) 반영

바. 전문임기제 도입 관련 응시자격 요건 신설(안 제14조제9항, 별표 5의4)

사. 특례규정에 따른 전직시험 방법 및 자격규정 삭제(안 제17조제5항·제6항)

1)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경과 등에 대한 조항 삭제

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10조의 유효기간(2016. 12. 31.)만료

아.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정비(안 제23조제3항, 별지 제13호서식)

자. 전문경력관, 별정직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의 승진연수 산입기간 변경(안 제24조제2항)

1) 3년 초과 재직한 기간 ⇒ 재직한 기간

2) 근거 : 영 제33조제9항 개정(2015.11.18.) 삭제

차. 일반직과 연구·지도직 상호간 전직 기준 신설(안 제24조의2)

1)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전직 임용예정 직급 지정 기준 신설

카. 특별승진 임용기준 정비(안 제25조)

- 1) 변경 : 규제개혁 ⇒ 규제혁신,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 국정과제
- 2) 신설 :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타. 그 밖의 정비

- 1) 자격증 명칭 변경 등 :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4
- 2) 별표·별지서식 단서조항 등 변경
- 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통일(안 별표 13)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3. 24.~4. 1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규칙 제1282호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u>미연에</u> 방지하여야 한다.</p> <p>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u>긴급을 요하는</u>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p> <p>제16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u>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u> <u>규칙</u>」 4.~9. (생략) ②~③ (생략) 	<p>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u>미리</u> 방지하여야 한다.</p> <p>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u>긴급한</u>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p> <p>제16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u>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근무</u> <u>규칙</u>」 4.~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당직근무자 편성(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비고
		숙 직	일 직	
본청	당직사령	6급 1명	5급~6급 1명	
	당직원	7급 이하 2명	7급 이하 2명	
농업기술센터		1명	1명	
보건소		채택당직	1명	
수도사업소		1명	1명	
<u>정수장</u>		<u>청원경찰 포함 1명</u>	<u>청원경찰 포함 1명</u>	<신 설>
체육시설사업소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채택당직	1명	
거창사건사업소		채택당직	1명	
안구교육과 <u>청소년수련관</u>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채택당직	1명	
한마음도서관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채택당직	1명	
종합사회복지관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채택당직	1명	<삭 제>
거창박물관		채택당직	1명	
수승대관리사무소		1명	1명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채택당직	1명	
거창창포원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채택당직	1명	
<u>거창 향노화 힐링랜드</u>		<u>채택당직</u>	<u>1명</u>	<신 설>
거창읍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채택당직	1명	
면사무소		채택당직	1명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0-27
----------	---------

제출연월일	2020. 4. 27.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당직근무자 편성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신설·삭제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순화함.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변경함(안 별표)

1) 신설

가) 정수장 : 청원경찰 포함 일직·숙직 각각 1명

나)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 일직 1명

2) 삭제

가) 종합사회복지관: 근무인원 충원으로 당직 불필요

3) 명칭변경

가) 부서명(인구교육과) → 시설명(청소년수련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제13조)

1) 미연에 ⇒ 미리, 긴급을 요하는 ⇒ 긴급한

2) 법제처 기획정비과제 중 어려운 한자어 정비 대상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3. 20.~4. 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규칙 제1283호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

제9조·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응급장비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응급장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비율: 응급장비 구입비의 50퍼센트 이내
2. 지원한도: 기업당 1개 한정, 1백만원 이내

제10조(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국내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부스: 조립 부스 2개 기준

2. 지원비율: 부스임차비 100분의 80
 3. 지원한도: 2백만원 이내. 다만,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은 3백만원 이내
-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국내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
 2.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3.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것

별지 제5호서식·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제11호서식·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 ①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고경영인상 시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한다.</p> <p>1.~3. (생략) 4. 근로자 사기양양과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 5.~7. (생략) ②~⑤ (생략)</p>	<p>제2조(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 ①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고경영인상 시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한다.</p> <p>1.~3. (현행과 같음) 4. 근로자의 사기를 복돋우고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 5.~7.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9조(응급장비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응급장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원비율: 응급장비 구입비의 50퍼센트 이내 2. 지원한도: 기업당 1개 한정, 1백만원 이내</p>
<p><신 설></p>	<p>제10조(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국내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기본부스: 조립 부스 2개 기준 2. 지원비율: 부스임차비 100분의 80 3. 지원한도: 2백만원 이내. 다만,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은 3백만원 이내</p> <p>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국내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고,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 2.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p>

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3.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것

[별지 제11호서식]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지원 신청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체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남/여)	
	소 재 지	거창군							
	종업원수	명(남: 여:)		주 생산품					
	연 락 처	부 서			담 당 자	직 위			
		전 화				성 명	(남/여)		
		팩 스				휴대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참가실적	최초신청(), 참가(CECO 회, 국내전시 회, 국외전시 회)								
전시회 (박람회) 참가사업 계획서	전시회명								
	개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개최장소								
	참가품목								
	참가부스	부스		총 면 적	제곱미터				
	참가목적								
사업비 집행계획	신청금액	금 (원)							
	항목	내역	재원내역(단위/원)						
			계	군보조	자부담	그밖에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시(박람회)회에 참가하고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 표:				(인)	
거 창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 정산서					
업체현황	업체명			대표자	(남/여)
	소재지	거창군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시회 (박람회) 참가개요	전시회명				
	참가품목				
	참가부스	부스	총면적	제곱미터	
	부스임차료	원	총참가비	천원	
활동성과	상담건수	건	상담금액	백만원	
	계약건수	건	계약금액	백만원	
	방문자수	명	바이어수	명	
같은 종류의 전시회 참여여부		참가		미참가	
전시회참가 자체평가					
제품에 대한 바이어 및 시장 반응					
주요성과 계약내용					
사업비 집행결과	계	군보조	자부담	그밖에	비고
	원	원	원	원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시(박람회) 참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업체명:			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전시(박람회) 부스임차료 지급관련 증명서류 각 1부					
2. 전시(박람회) 참가 증명사진 2매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0-2
----------	--------

제출일자	2020. 2. 17.
제 출 자	미래전략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응급장비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한자어 정비(안 제2조)

1) 양양 ⇒ 북돋우고

나. 근로자를 위한 응급장비 지원기준 마련(안 제9조)

1) 지원 비율 : 응급장비 구입비의 50퍼센트 이내

2) 지원 한도 : 기업당 1개 한정, 1백만원 이내

다. 지원의 세부기준, 서식을 조례에서 이동 규정(안 제10조, 별지 제10호·제11호·제1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3조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18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10,000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과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 14.~2. 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규칙 제1284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 ①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2. 공장건물 배치도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5. 오수 및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오수·폐수 유입 처리를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 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폐수 등 배출 신고) 사업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를 군수에게 해야 한다.

제4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폐수 등 배출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은 서면으로 알린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제5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용료 산정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산정기준(제6조 관련)

1. 산정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처리시설 사용료(BS)

$$BS = M \times \left\{ 0.5 \times \frac{BLi}{\sum_{i=1}^n BLi} + 0.5 \times \frac{F(Li)}{\sum_{i=1}^n F(Li)} \right\}$$

가. M: 월간 사용료 = 유지관리비 + 시설개선충당금

1) 유지관리비: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연간 시설개선충당금: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 금액에 일정 적립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E = Ei \times Fi \times R$$

· Ei: 시설 설치 비용

· Fi: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충당금 적립률

$$Fi = \frac{2}{1,000} \times \frac{\text{월간 일평균유입량(m}^3/\text{일)}}{\text{시설용량(m}^3/\text{일)}}$$

· R: 물가상승률(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연도 물가지수)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지수

나. BLi: 배출 사업자의 일평균 유입승인 오염 부하량

1) BLi = 유량(m³/일) × [BOD+COD+SS+T-N+T-P농도(mg/ℓ)]/1,000

2) 해당 월의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이 유입 승인받은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유입 처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F(Li): 개별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F(Li) = a \cdot Qi \times \left(\frac{BODi + CODi}{2} + SSi + T-Ni + T-Pi \right) / 1000$$

1) Qi: 배출 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 등의 실제 배출유량

2) BODi, CODi, SSi, T-Ni, T-Pi: 개별사업장의 BOD, COD, SS, T-N,

T-P 농도

3) a: 유량 누진계수

유 량 (m ³ /일)	a
$Q_i \leq 200$	1.0
$200 < Q_i \leq 500$	1.1
$500 < Q_i$	1.2

라. 오수·폐수 배출 사업자의 산정된 실제 납부금액이 하수도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 하수도 사용료의 1.2배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2. 실제 배출되는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1) 폐수, 침출수 등 배출 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2) 오수 배출 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균수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나)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를 말한다) 사용량 \times 0.8(오수전환율)

다)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1) 종업원 수 \times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2)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균수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1)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 등)의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 사

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다만,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가 별도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배출 허용기준으로 산정한다.

- 나)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 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 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 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2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 군수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월 2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 위탁자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라)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2) 오수의 경우

가) 사업장의 오수

- (1)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2) BOD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3) COD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4) SS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5) T-N 30 mg/ℓ (기숙사 40 mg/ℓ)
- (6) T-P 3 mg/ℓ (기숙사 4 mg/ℓ)

[별표 2]

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제7조 관련)

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정공식

$$CS = a \times Qi \times \underline{Wi}$$

가. CS: 월간 사용료

나. a: 누진계수

(오수배출업소 a=1.0, 폐수배출업소 a=1.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업소 a=1.2)

다. Qi: 업소별 월간 배출유량

라. Wi: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지원 가격(원/m³)

$$\underline{Wi} = \frac{\text{연간유지관리비 (원)}}{30\text{일} \times 12\text{개월}} \times \frac{1}{\text{월간 일평균유입량 (m}^3\text{/일)}}$$

2. 시설개선충당금 산정공식

가.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

$$\frac{\text{개별 사업장 시설개선충당금}}{\text{개별 사업장}} = \text{월간 시설개선충당금} \times \frac{Qi \text{ m}^3\text{/일(개별사업장 배출유량)}}{\sum Qi \text{ m}^3\text{/일(전체사업장 배출유량)}}$$

$$\underline{\text{월간 시설 개선충당금}} = \underline{\text{재산가액(원)}} \times \frac{2}{1,000} \times \frac{\underline{\text{월간 일평균유입량(m}^3\text{/일)}}}{\underline{\text{시설용량(m}^3\text{/일)}}$$

나. 월간 시설개선충당금(E):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사용료 산출기준[별표 1]의

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정공식의 시설개선충당금 항목을 적용한다.)

다. 배출유량: 사용료 산정 기준[별표 1]의 2. 실제 배출되는 유량 및 농도 산정 방법의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을 적용한다.

3. 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

오수배출업소의 사용료 지원금은 거창군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사용료** 기준에 따른 요금과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2. 시설개선충당금 산정공식)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오수·폐수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포함)는 폐수배출업소기준(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정공식)을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남/여)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p>「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고 인: (서명 또는 인)</p>		
<p>거 창 군 수 귀 하</p>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20-4
----------	--------

제출일자	2020. 2. 17.
제 출 자	미래전략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폐수 등 유입 처리 승인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정함(안 제2조)
- 나. 폐수 등 배출 신고 절차를 정함(안 제3조)
-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정함(안 제4조)
- 라.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6조, 별표 1)
- 마. 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7조, 별표 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지방자치법」 제2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1. 21.~2.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별지 제1호제·3호서식에 성별구분항목)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규칙 제1285호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선정 대리인 신청·결과통지 등) ①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거창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거창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의3제6항에 따른 거창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9조의2(선정 대리인 신청·결과통지 등) ①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거창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u></p> <p><u>② 조례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거창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u></p> <p><u>③ 조례 제4조의3제6항에 따른 거창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u></p>

거창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군 선정 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거창군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거 창 군

거창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귀하

1. 거창군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거창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거창군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창군 선정 대리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거창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거창군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거창군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거창군 선정 대리인: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거창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거창군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관인생략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0-12
----------	---------

제출일자	2020. 4. 3.
제 출 자	재무과장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및 지정 절차에 따른 관련 서식을 신설함(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제4조의2~제4조의4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2. 14.~3. 5.

나) 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규칙 제1286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공유재산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목·본문 중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공유재산 대장”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공유재산 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제2호·제5호·제8호·제9호·제20호·제21호·제22호·제23호·제24호·제25호·제29호·제42호·제43호·제44호서식에 “(남/여)”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② (생략)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u>공유재산 관리대장</u>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8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조례 제7조에 따른 <u>공유재산 관리대장</u>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p> <p>제15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p>	<p>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u>공유재산 대장</u>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공유재산 대장) 조례 제7조에 따른 <u>공유재산 대장</u>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p> <p><삭제></p>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0-14
----------	---------

제출연월일	2020. 4. 3.
제 출 자	재무과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위배사항과 상위법령 인용 용어의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인용 용어 정비(안 제4조, 제8조, 별지 제2호서식)

1) 공유재산 관리대장 ⇒ 공유재산 대장

2)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나.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규정 삭제(안 제15조)

1) 기부채납 시 필요한 서식이 법령과 달리 규정되어있어 법령 위배

2)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2. 19.~3. 10.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별지서식에 성별 구분항목 신설)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규칙 제1287호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통합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

다.

② 회계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라 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회계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이 분임 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청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라.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2. 제1관서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대체 징수 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라.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회계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재무관이 분임 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청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나.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2. 제1관서

가.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나.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회계규칙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그 밖의 관서에 위임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회계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결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군수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본청 담당관·과장: 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1관서의 과장: 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회계규칙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전액으로 한다. 다만, 회계규칙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제7조(출납원 사망 등으로 인한 다른 공무원 지정기준) 회계규칙 제97조 및 제13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사망 등으로 다른 공무원을 지정할 경우 「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거창군 사무의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의회사무과	제1관서
회 계 책 임 관	행정복지국장	-	-
징 수 관	행정복지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재무과장 각 담당관 · 과장 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	-	세입업무 담당과장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재 무 관	행정복지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분 임 재 무 관	재무과장, 각 담당관 · 과장: 일상경비 중 에서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	-	농업기술센터: 회계업무 담당과장, 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
총 괄 채 권 관 리 관	행정복지국장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담당관 · 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기획예산담당관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담당관 · 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기획예산담당관	-	-
통 합 지 출 관	재무과장	-	-
지 출 원	경리담당	의사담당	각 관서 회계 · 지출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재정·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의사담당	각 관서 세입업무담당
특 별 회 계 출 납 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특별회계 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담당관·과 지출업무담당	-	각 관서 지출업무담당
세 입 세 출 납 외 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자	각 관서 지출업무담당자, 각 관서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2명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	그 밖의 관서	읍·면
회 계 책 임 관	-	-
징 수 관	관서의 장	읍·면장
분 임 징 수 관	-	-
재 무 관	-	읍·면장
분 임 재 무 관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
총 괄 채 권 관 리 관	-	-
채 권 관 리 관	관서의 장	읍·면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	-
부 채 관 리 관	-	-
총 괄 기 금 관 리 관	-	-
통 합 지 출 관	-	-
지 출 원	-	읍·면 총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담당	읍·면 총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지출업무담당	읍·면 총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원	지출업무담당, 서무업무담당자	읍·면 지출업무담당자 읍·면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2명 이상이 업무처리	

- 비고 1. 담당: 각 담당·팀 등 6급 이상
 2. 담당자: 6급 이하 실무 담당자

[별표 2]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그 밖의 관서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그 밖의 관 서
1. 농업기술센터 2. 보건소 3. 수도사업소 4. 체육시설사업소 5. 거창사건사업소	-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0-28
----------	---------

제출일자	2020. 4. 27.
제 출 자	재무과장

1. 제안이유

기존에 표준안 형식이던 것을 위임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훈령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위임사항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변경함

1)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 ⇒ 거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징수관·재무관의 직무 위임 및 집행품의 전결, 재정사항 합의의 기준액을 재정분권 취지에 맞게 군 자율적으로 결정 및 확대(안 제3조~제6조)

1) 징수관 직무위임 : 세입 징수결정 대상과 금액의 범위를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

가) 본청 : 그 밖에 징수결정 건당 400만원 이하

⇒ 건당 1천만 원 이하

나) 제1관서 : 그 밖에 징수결정 건당 500만원 이하

⇒ 건당 1천만 원 이하

2) 재무관 직무위임 : 공사·토지매입, 물품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등 대상과 금액의 범위를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

구분	공사·토지매입		제조·용역 / 물건매입		그 밖에·조달물자구매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본청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5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제1관서	3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3) 예산집행품의 전결기준 :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직제 등의 차이에 따라 공사, 물품제조·용역 등 예산집행품의 전결대상과 금액범위를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

가) 본청

구분	공사·토지매입		제조·용역		그 밖에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부군수	2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국 장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3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담당관·과장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나) 제1관서(제1관서의 장 ⇒ 소속 과장)

(1)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집행 ⇒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

4) 재정사항 합의 : 관서별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에 대한 기준액 범위를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

구분	공사·용역계약 관련 경비		물품제조·구매		시책추진·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본청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현행과 같음
의회사무과·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현행과 같음

다. 지방회계에 관한 공통 규정인 행정안전부 훈령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훈령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고 위임사항만 규정하여 재편

1) (현 행) 10장 160개 조문, 별표 5개, 별지서식 110개

2) (개정안) 7개 조문, 별표 2개(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 구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 2)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훈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3. 23.~4. 13.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규칙 제1288호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의견진술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차·정차 위반(이하 “주정차위반”이라 한다) 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상당한 이유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1호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교통업무 관련부서 공무원
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교통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모범운전자회 등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조사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불참,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운영) ① 위원회 심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

1.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의 소재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기준과 제출서류(제3조제2항 관련)

관계법령	유형	세부유형	제출서류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제1호	차량 도난	차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발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 1 호	범죄 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관련 공문서 등
	제 2 호	도로 공사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도로포 장이나 굴착 등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경 우 등	관련 공문서 등
		교통 지도		
	제 3 호	응급 환자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다만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의견진술서, 응급진료 확인서 등
	제 4 호	구난 작업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련 공문서 또는 객관적 입증서류
제 5 호	장애인 승하차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 장애인의 승 하차를 위해 주차했다는 구체적인 진술 필요	의견진술서(장애인 인적사항 기재), 동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서류 (장애인증명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행 장애인 배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의 경우	의견진술서, 장애인증명서, 방문입증서류	
		장애인 주차 가능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견진술서, 국가유공자증, 자동차표지 사본	
		현저한 보행장애 있는 고령환자의 진료를 돕는 경우	의견진술서,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장애 인 활동 도우미, 활동지 원사 증명 서류	
		장애인 이동수단의 수리를 위한 경우: 보조기구 없 이는 이동이 불가한 자의 긴급요청에 응한 경우	의견진술서, 수리업 증명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내역서, 장애인증명서	

관계법령	유형	세부유형	제출서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동 불가	주행 중 차량고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주차이 후에 발생한 차량고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의견진술서, 차량견인내역서, 보험사 긴급출동요청내역서, 차량점검·정비내역서
		차량 운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형버스 등 일반적인 견인이 어려운 차량의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의견진술서, 출동·정비내역서 등
		교통사고의 현장 보존 및 조사를 위한 경우	의견진술서, 사고접수내역서, 출동내역서 등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된 경우	의견진술서, 음주운전 적발내역(경찰서발급)
	긴급 상황	응급한 진료 및 처치를 위한 경우: 당시 진료했던 의사의 소견으로 응급했던 상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	의견진술서,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긴급요청에 응해 조치를 취한 경우. 다만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 긴급 현혈요청 등 응급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차한 경우	의견진술서, 객관적 입증서류
	현금수송·생계형 화물 차량	현금수송 및 물품의 승하차를 주업으로 하는 화물차량 등이며, 작업 중인 경우 1. 주차한 이유가 물품 승하차를 위한 것이 입증되면 작업 중인 것으로 봄 2. 인테리어 공사, 이사 등 작업 차량	의견진술서, 운송장, 계약서(이사 등), 거래내역서, 공사 증빙서류 등 위반 장소와의 관계서류
	공익 목적	외교, 군사, 긴급취재, 공공기관, 긴급조사, 공공을 위한 작업·행사관련 등 공익을 위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관련 공문서 등
		선거유세기간에 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었거나, 주민투표 관련 선거 유세 차량	의견진술서,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확인서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위법성 착오	주차가능 구역으로 믿는 데에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식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한 경우 등	의견진술서, 단속사진 등 그 밖의 입증 자료	

거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의안 번호	2020-16
----------	---------

제출일자	2020. 4. 3.
제 출 자	경제교통과장

1. 제안 이유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의견진술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주정차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근거를 둠(안 제2조)

나. 위원회 기능을 정함(안 제3조)

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기준(안 별표)

2)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3)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등

다. 위원회 구성·직무·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 2020년 추경예산 확보 예정(위원회 수당)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 2. 7.~2. 27.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안 제4조제3항)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규칙 제1289호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장시간 등) ①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이하 “힐링랜드”라 한다) 일일 입장 및 입실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입장 및 입실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힐링랜드 입장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그날 15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3. 주차장: 그날 13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② 성수기와 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수기: 7월·8월, 금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
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제3조(입장료 등 세부기준) ① 조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및 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휴가증 포함)을 소지하거나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군 대체복무자, 의무소방원과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15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할인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행할 수 있다.

1. 국내외 사정으로 위축된 경기회복이 필요할 경우
2. 거창군 축제 등으로 관광 및 소비 촉진이 필요할 경우
3. 힐링랜드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족단위 방문자”란 18세 이하의 아동과 보호자(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한다)가 함께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휴관일)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힐링랜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임시 휴관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힐링랜드 게시판 및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판매 등) ① 힐링랜드 입장료, 시설사용료, 체험료의 징수는 매표소에서 판매하고, 시설사용권은 예약할 수 있다.

- ② 시설사용권의 예약은 결제를 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③ 군수는 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시설입구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목적) 조례 제5조에서 “공익목적”이란 산림문화·휴양의 진흥과 힐링랜드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20-19
----------	---------

제출연월일	2020. 4. 3.
제 출 자	산림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입장시간 등을 정함(제2조)

1) 힐링랜드 입장시간 : 9시부터 18시까지

2) 성수기 : 7월·8월, 금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

나. 입장료 등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3조)

다. 휴관일을 정함(안 제4조)

마. 입장료 등 판매를 정함(안 제5조)

바. 공익목적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569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3. 6.~3. 2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0년 5월 6일

거창군 규칙 제1290호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이고, 지원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경상남도 예외지원 산모
2. 세대기준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위소득”이라 한다) 첫째아 100퍼센트 초과 120퍼센트 이하
산모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기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가 서비스를 받은 곳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장 간 이동거리가 3킬로미터 이상일 경우 1일 1만원(국비·도비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기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조례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가 본인부담금 또는 정액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은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정액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출산증명서 1부
3.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증명자료를 붙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원자격 확인 및 지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황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7조(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기준(제2조 관련)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구분	지원금액
단태아	첫째아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0퍼센트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정부 지원금 단축형·표준형에 따라 지원
	둘째아			단축형 : 30만원 표준형·연장형 : 40만원
	셋째아 이상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단축형 : 30만원 표준형·연장형 : 50만원
다태아	쌍태아	둘째아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4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삼태아 이상			60만원

1. “단축형·표준형·연장형”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기간을 말한다.
2.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말한다.
 - 가. 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둘째아 해당
 - 나. 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셋째아 이상 해당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20-7
----------	--------

제출연월일	2020. 2. 19.
제 출 자	보건소장

1. 제안이유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 대상·범위·절차 등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2조)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단태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정부지원금 단축형·표준형 지 원	단축형 : 30만원 표준형·연장형 : 40만원	단축형 : 30만원 표준형·연장형 : 50만원
다 태 아	쌍태아	-	40만원
	삼태아 이상	60만원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3조)

1) 요건 : 이동거리 3킬로미터 이상일 것

2) 범위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에 따라 1일 1만원(국도비 포함)

다.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및 지급, 대장비치, 준용을 정함(안 제4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78,5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 30.~2.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고시 제2020 - 51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47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465호('92.12.24.)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 (교통시설:소로3-47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0. 05. 04.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비고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47호선)	거창	가지	소로	3	47	147.5	6.0	1,077	거창읍 가지리 675-1 ~ 거창읍 가지리 652-1	경고465호 ('92.12.24)	

2. 사업 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6개월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1) 교통시설(도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거창읍			8,344	1,077					
1	가지리	675 - 1	전	60	4		조*봉			
2	가지리	667 - 1	답	117	37		경상남도			
3	가지리	667	답	800	108		거창군			
4	가지리	667 - 2	답	830	48		거창군			
5	가지리	666	답	2,069	350		거창군			
6	가지리	1714 - 2	도	1,305	274		국 (국토교통부)			
7	가지리	648 - 2	답	1,353	59	경남 거창군 거*읍 강**길 61-3, 301호(유*리* *차)	신*휘			
8	가지리	650 - 1	답	85	4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길 7	양*용			
9	가지리	650 - 2	도	150	43		거창군			
10	가지리	651	답	169	90	경남 거창군 거*읍 강**길 61-3, 301호(유*리* *차)	신*휘			
11	가지리	1714 - 5	도	11	11		국 (국토교통부)			
12	가지리	652 - 1	도	929	8		거창군			
13	가지리	672	대	466	3		거창군			

5.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공고 제2020 - 677 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 1-49 호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 1- 49 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5. .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 1-49호선)	거창	상림	소로	1-49	300.0	6.6	3,101	거창읍 상림리 680-1~ 거창읍 상림리 650-2	거고43호 ('08. 9. 25.)	2020. 6 ~ 2020. 12

2. 사업 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20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소로 1-49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6,165	3,101	-	-	-	-	-
1	거창읍 상림리	664-1	답	847	14		경상남도			
2	“	680-1	도	422	275		거창군			
3	“	664-2	답	137	54		경상남도			
4	“	747-29	두	9,573	1,567		국(농림수 산부)			
5	“	664	답	414	26	거*군 거*읍 거*로9길 1*7	김*용			
6	“	663-2	답	101	25	거*군 거*읍 죽*길 1*9	김*숙			
7	“	653	전	435	234	567	장*영			
8	“	653-2	도	79	78		거창군			
9	“	653-4	대	202	62		거창군			
10	“	653-1	전	239	130		거창군			
11	“	653-3	도	55	55		거창군			
12	“	683-7	도	111	10	거*군 거*읍 거*로9길 1*4	성*현 외 2인			
13	“	683-1	도	18	11		경상남도			
14	“	654	전	697	44	거*군 거*읍 대*리 13-31 베*스*운 10*-*203	최*재			
15	“	654-1	잡	516	18	540, 상*빌* *동 50*호	구*모			
16	“	683-4	전	518	7	울*광역시 북구 매*로 66, 2*0동 2*05호	염*복			
17	“	749-4	도	536	317		국(국토교 통부)			
18	“	651-1	대	494	53	거*군 거*읍 거*로9길 1*0	김*환			
19	“	650-2	답	469	39	거*군 거*읍 강*로 1*0	박*용			
20	“	650-1	도	302	84		거창군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등 아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면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 전 화 :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055-940-3595)
 - 기 타 : FAX(055-940-3579), E-mail(oodles1217@korea.kr)

의 건 서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원 【가천지구 하천재해 예방공사 및 하도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에 의거 보상협의를 통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 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6.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가천지구 하천재해예방공사 및 하도구간
2. 사업 시행자 : 경상남도
3. 공고 기간 : 2020. 5. 6. ~ 2020. 5. 22.
4. 공시송달 대상자 : 불임참조
5. 송달할 내용 :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
가. 협의 방법 : 소유자 개별협의
나. 협의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055-940-3643)
다. 보상금 지급 :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지급(계좌이체)
6. 공고 장소 : 거창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사항

위 공고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8조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의 명칭 및 공시송달대상

사업 명 : 가천지구 재해예방공사

공시송달대상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 입 면적(㎡)	소유자		비고
					주 소	성명	
1	가조면 기리	576	하천	1,708		신익성	
2	가조면 대초리	192	답	325		김상국	
3	가조면 대초리	202	하천	826		김시공	
4	가조면 대초리	210	하천	10		조개	
5	가조면 대초리	193-1	답	98		김한수	
6	가조면 대초리	193-2	하천	142		김한수	
7	가조면 대초리	200-2	하천	50	일부리	김판점	
8	가조면 대초리	201-2	하천	411	거창읍 상동	임을안	
9	가조면 대초리	356-2	하천	167		노하용	
10	가조면 대초리	357-2	하천	226	일부리	이상도	
11	가조면 대초리	358-2	하천	307		김시정	
12	가조면 대초리	359-2	하천	106		김시정	
13	가조면 대초리	360-2	하천	482		김병억	
14	가조면 대초리	370-6	하천	36		김쾌능	
15	가조면 동례리	산1-1	임야	634	석강리	이재기	
16	가조면 동례리	산1-2	임야	579	석강리	이재기	
17	가조면 동례리	34-2	하천	94	기리	이병규	
18	가조면 동례리	35-2	하천	67	대초리	김시걸	
19	가조면 동례리	39	하천	1,021	일부리	김채환	
20	가조면 동례리	40	하천	43	기리	박삼술	
21	가조면 동례리	326	하천	235	동예리	고치수	
22	가조면 동례리	327	하천	645	대구시 중구 봉산동 234	김영호	
23	가조면 동례리	33-4	하천	3	기리	이정도	
24	가조면 동례리	33-5	하천	149	기리	이정도	
25	가조면 동례리	34-1	하천	731	기리	이병규	
26	가조면 동례리	40-1	하천	383	기리	박삼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 입 면적(㎡)	소유자		비고
					주 소	성명	
27	가조면 기리	812	천	245	대초리	김병성	
28	가조면 기리	813	답	1,007	대구시 중구 봉산동 234	김영호	
29	가조면 기리	815	천	592		이현복	
30	가조면 기리	816	천	417		김상필	
31	가조면 기리	817	천	747		강기문	
32	가조면 기리	819	천	195		김상필	
33	가조면 기리	821	천	489		이상술	
34	가조면 기리	850	천	733		김병희	
35	가조면 기리	850-1	천	103		김병희	
36	가조면 기리	851	천	1,742		김진옥	
37	가조면 기리	856	천	1,025		이경술	
38	가조면 기리	925	천	403		이금술	
39	가조면 기리	926	천	595		이치용	
40	가조면 기리	927	천	615		오시준	
41	가조면 기리	932	천	245		이치용	
42	가조면 대초리	203	천	1,107		김수복	
43	가조면 동례리	35-1	천	6,122	대초리	김시걸	
44	가조면 동례리	36	천	1,633	대초리	김상필	
45	가조면 동례리	37	천	754	석강리	박종찬	
46	가조면 동례리	38	천	919	기리	문종업	
47	가조면 동례리	41	천	165	기리	박삼술	
48	가조면 동례리	42	천	142	합천군 봉산면 계산리	김상오	
49	가조면 동례리	43	천	3,534	석강리	박종찬	
50	가조면 동례리	44	천	1,554	기리	박동기	
51	가조면 동례리	45	천	1,177	남하면 대야리	추경호	
52	가조면 동례리	46	천	2,083	기리	김문선	
53	가조면 동례리	48	천	1,273	기리	이병규	
54	가조면 동례리	51	천	770	기리	김병의	
55	가조면 동례리	53	천	1,408	기리	최용환	
56	가조면 동례리	61	천	1,729		김기술	
57	가조면 동례리	66	천	598	기리	강기문	
58	가조면 동례리	67	천	932	기리	최성삼	
59	가조면 동례리	70	천	509	기리	이만대	
60	가조면 동례리	328	천	530		김점운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 입 면적(㎡)	소유자		비고
					주 소	성명	
61	가조면 동례리	331	천	1,038	웅양면 죽림리	이기수	
62	가조면 동례리	333	천	1,186		오명준	
63	가조면 동례리	334-1	천	169	동예리	이병선	
64	가조면 동례리	334-2	천	853	장기리 88	정용준	
65	가조면 동례리	334-3	천	179		이병선	
66	가조면 동례리	388	잡	79		어용우	
67	가조면 동례리	389	천	516		이웅개 이우철	
68	가조면 동례리	390-1	천	2,420	대구 상동	진희규	
69	가조면 동례리	390-2	천	535		진기조	
71	가조면 동례리	390-3	천	700	대구 상동	이판생	
72	가조면 동례리	390-4	천	1,715		어윤봉	
73	가조면 동례리	391-1	천	1,035		진백형	
74	가조면 동례리	391-2	천	544		진백형	
75	가조면 동례리	395-1	천	635		신종화	
76	가조면 동례리	396-1	천	397		신종화	
77	가조면 동례리	397	전	334		신점출	
78	가조면 동례리	398	천	1,537		신종말	
79	가조면 동례리	399	천	1,679	거창읍 중동	이덕재	
80	가조면 동례리	399-1	제	10	거창읍 중동	이덕재	
81	가조면 동례리	401	천	913	경북 달성군 수성면 상동	진희규	
82	가조면 동례리	401-3	천	5	경북 달성군 수성면 상동	진희규	
83	가조면 동례리	401-4	천	28	경북 달성군 수성면 상동	진희규	
84	가조면 동례리	458-1	천	54		이주화	
85	가조면 동례리	465-1	천	126	대구부 상동 363	진희규	
86	가조면 동례리	465-2	천	345	대구부 상동 363	진희규	
87	가조면 동례리	467-2	천	63		이병윤	
88	가조면 동례리	471-1	천	605		오명준	
89	가조면 동례리	471-2	천	1,319		오명준	
90	가조면 동례리	471-3	천	578		오명준	
91	가조면 동례리	472-1	천	756	김천군 김천읍 황금정 82	김기용	
92	가조면 대초리	361-2	답	9		김한기	
93	가조면 동례리	1366	전	1,271	장기리 1394	김용숙	
94	가조면 동례리	1369	임	3,514	장기리	이소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 입 면적(㎡)	소유자		비고
					주 소	성명	
95	가조면 장기리	125-2	임	5,606		김성엽	
96	가조면 장기리	168-1	천	827	동례리	황일색	
97	가조면 장기리	168-2	천	78	동례리	여봉석	
98	가조면 장기리	170	천	1,345		김계범	
99	가조면 장기리	171-1	천	182		김인준	
100	가조면 장기리	171-2	천	701		김인준	
101	가조면 장기리	172	천	645		박판암	
102	가조면 동례리	325-4	천	15	경남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422	이수균	
103	가조면 동례리	325-4	천	15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025	이기성	
104	가조면 동례리	1739-30 7	답	23	경남 거창군 동례리 586	이호임	
105	가조면 대초리	699-203	답	27	경남 거창군 동례리 586	이호임	
106	가조면 대초리	699-202	답	2	경남 거창군 동례리 586	이호임	
107	가조면 대초리	656-4	답	2	부산 북구 구포동 1234-49 신성하이츠빌라 비-4	하용윤	
108	가조면 대초리	457-1	답	8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39 가림마을 115-0501	하용기	
109	가조면 대초리	396-6	구	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 43-1	김한렬	
110	가조면 기리	933-11	임	126	경남 거창군 가조면 기리 982	이영섭	
111	가조면 기리	811-1	천	83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창남4길62, 2층	이영섭	
112	가조면 동례리	479-1	천	206	경남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586	민성식	

끝.